

판 결

사 건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, 도로교통법위반
(음주운전)

피 고 인

검 사

변 호 인

변호사 조효동(국선)

판 결 선 고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